

##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저소득자 중에 특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협력으로 이용자 부담, 숙박비를 경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는 개인실의 거주비(체재비·숙박비)만이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로서 특히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생활보호 수급자

### 대상 서비스(개호예방 서비스 포함)

- 개호노인 복지시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 통원개호
- 치매대응형 통원개호
-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 단기입소 생활개호
- 방문개호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정기순회 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복합형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의 구청의 개호보험 창구로.

## ●이용자 부담의 감면

재해 등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이용료 지불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분의 이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의 구청의 개호보험 창구로.



- 실직 등으로 생계 중심자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을 경우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가옥 등이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